

# 특혜자피자

[특혜자피자]

## 정보공개서

[가성빛]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60078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6.01.1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6.01.15.

### 가성빛

#### < 주의 사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97번길 33-15, 1층 일부(상동)

대표번호(가맹사업부와 동일) Tel : 032-321-0772

##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 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소			
가성빛	특혜자피자 외1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97번길 33-15, 1층 일부(상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23.12.01.	육양욱	032-321-0772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92-04-02988	

###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수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특혜자피자	
상 호	특혜자피자 OO점	보통 상호와 지역명칭을 함께 설정하여 지정함
상표(서비스표)	특혜자피자	출원준비중
그 밖의 영업표지	-	-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	-	-	-	-	-
2023년	3,740	0	3,740	46,014	3,171	3,740
2024년	40,212	0	40,212	600,808	32,966	40,212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의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육양욱	대표	2020.12. ~2023.11.	가성빛 대표	업무총괄
			2023.12. ~ 현재	가성빛 대표	업무총괄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	-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가성빛 / 육양육	가맹사업 경영	2024.04~현재	가성빛피자(등록번호: 20240324) 이라는 영업표지의 피자/치킨/스파게티 전문점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출원 및 등록번호(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특혜자피자>	매장 인테리어 및 홍보	출원 준비중		

※ 당사의 상표는 현재 출원 준비중이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특혜자피자] 가맹사업 현황

### 1. 『특혜자피자』을 시작한 날: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당사는 특혜자피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성빛피자) 매장을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2. 『특혜자피자』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성빛	특혜자피자	육양욱	가맹계약 체결사실 없음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97번길 33-15, 1층 일부(상동)

### 3. 『특혜자피자』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특혜자피자	피자	피자, 치킨, 스파게티 등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특혜자피자』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특혜자피자』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0

6. 『특혜자피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특혜자피자] 외에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가성빛	가성빛피자	20240324	피자	-	0/1	3/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0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8. [특혜자피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0	0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특혜자피자]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특혜자피자]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인터넷 등	-	-	-	-	
광고	소계	-	-	-	-	

###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를 이용할 계획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특혜자피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8,800	-	-	-	-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 시	-	브랜드 사용에 대한 소멸성 대가	-
교육비	3,300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액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	-	-
(현금)보증금	3,000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금 등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비고
합계	11,800	-
가맹비	5,500	-
교육비	3,300	-
(현금)보증금	3,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33m<sup>2</sup>(1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m <sup>2</sup>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	45,100	4,510	-	-	-
인테리어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미지정)	16,500	1,650	가맹계약 체결 후 협의하여 결정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3,300	330		제작 전 계약취소	
설비/집기		22,000	2,200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원부재료)		3,300	330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직접 인테리어 설비를 시공·설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직원파견 및 검수 등의 대가로 **감리비 3.3m<sup>2</sup>당 금이십이만원(₩220,000/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을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 특별한 기준 없음	- 만18세 이상일 것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할 예정입니다.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특혜자피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부)정기 교육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	가맹본부	협의 후 결정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광고/ 판촉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 (예를 들어 『특혜자피자』가맹점사업자가 3인인 경우 당사가 25%, 각 가맹점사업자가 25%씩 부담)  가맹점사업자들이 지역단위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가맹본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사업자들이, 귀하가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비용을 부담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또는 가맹본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월 550	가맹본부	익월 5일 까지	-	소멸성 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연 20%	가맹본부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 위 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필요시	문의 : 가맹본부
위생 청소상태 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회계처리	매출자료에 대한 회계 조사 및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특혜자피자]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특혜자피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양수인은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5조) 계약종료 후 조치

-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을"은 "갑"의 가맹사업 시스템 및 운영방법, 노하우 등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상호, 간판, 휘장, 로고 등 일체(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SNS 등 포함)의 영업표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을"의 비용으로 7일 이내에 "을"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본 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 ③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을"은 공급된 상품 등을 "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반환상품 등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을"은 "갑"이 제공한 모든 매뉴얼 및 양식,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날로부터 7일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사용하여 당 가맹점이라는 것을 공중에게 직·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
- ⑥ "을"은 계약기간 동안이나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레시피를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갑"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본 계약의 규정이나 목적상 본 계약의 만료 또는 종료 후에도 존속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조항은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갖는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특혜자피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규격)	공급가격 (단위: 원)		구분(공급업체)
		상한	하한	
1				
2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특혜자피자]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특혜자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지불	경제적이익	금액(천원/부가세포함)	비고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가 [특혜자피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3] 참조	가맹점사업자 임의로 용역(서비스) 및 판매상품을 추가/변경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 위반 :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서비스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또는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1회위반: 서면시정요구 - 2회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위반: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5] 와 같습니다.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하는 물품을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할 수 있으며, 귀하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또한,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변경된 영업정책(상품, 서비스, 물품 등의 변경)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시에 적용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피자, 치킨, 스파게티 등을 메뉴로 하는 업종	가성빛피자 특혜자피자	해당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단, 당사가 지정한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의 경우에는 영업지역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특혜자피자』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특혜자피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

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특혜자피자]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 2 ]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b>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	D-day
<b>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b>	D-day
<b>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b>	D-day
<b>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b>	-
<b>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b>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비, 교육비, 물류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제1항)

1. 귀하가 2회 이상 로열티 등의 정기납입경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2. 귀하가 "갑"의 영업 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 귀하가 "갑"과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4. 귀하가 "갑"과 약정한 광고·판촉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귀하가 "갑"으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7. 귀하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특혜자피자>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8. 기타 귀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제3항)

1. 당사가 부당하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물품 등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귀하)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당사)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다만, 귀하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제2항)

-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이승일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즉시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제34조 제3항)
1. 당사가 파산·화의 등의 신청을 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당사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조문 : 가맹계약서 제40조(계약의 효력 및 변경)

제40조 (계약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논의된 모든 사항을 규정한 최종 계약이다. 따라서 양당사자는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교환된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상담, 권고, 협의 등을 이유로 “본 계약”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경우, 또는 “갑”과 “을” 상호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또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결정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위탁운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특혜자피자]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특혜자피자]와 동일한 서비스·상품을 판매·제공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또한, 귀하는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일한 업종/업태의 매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특혜자피자]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00~24:00 이상 개점	월 28일 이상, 주 6일 이상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7일 전 당사의 승인 필요)	문의: 가맹본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품질(quality)	담당자 매장 방문→품질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방문	본사 관리팀	
서비스(service)	담당자 매장 방문→서비스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본사 관리팀	
청결(clean)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상태 확인→ 관리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완료		본사 관리팀	
경영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POS점검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본사 관리팀	

※ 위 내용은 당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특혜자피자]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성격	부담비율		부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b>동일한 비율로 부담</b> 예를 들어 『특혜자피자』 가맹점사업자가 3인인 경우 가맹본부 25%, 각 가맹점사업자가 25%씩 부담  단, 가맹점모집광고일 경우 가맹본부 100%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판촉	가맹본부	판촉행사의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본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기획판촉	부가 부담하며, 판촉행사의 기획에 따른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 기념품, 팜플렛,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등의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가맹점사업자 개별판촉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판촉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당 가맹점사업자 100% 부담

※ (참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 득해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서 광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광고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39조 (손해배상)

-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갑" 또는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금 감면조건이라도 최초가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 ④ "을"이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담보제공 하거나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10,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계약해지 · 종료 시 제35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을"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금일십만원(₩100,000)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이 제36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하거나 경업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을"이 제37조를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필수품목 등을 자점매입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 ▶ 1차 적발시 금일백만원(₩1,000,000) / 2차 적발시 금삼백만원(₩3,000,000) / 3차 적발시 금오백만원(₩5,000,000)
- ⑧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일천만원(₩10,000,000) 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불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3㎡(10평)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55~5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체결	D-55~53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공사일정확인	D-52~5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 등)	D-45~5(30일)	
주방설비 입고	- 주방설비 및 집기류 입고 셋팅 - 초도 인쇄물 입고 등	D-10~4(6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협의(10일)	
가오픈 리허설	- 오픈전 최종점검 및 리허설	D-3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41조)

- ① “갑”과 “을” 간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조항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유추·해석하여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른다.
- ② 당사자 간의 대화와 노력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 결정이나 중재판정에 따른다. 조정의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시·도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
- ③ 동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나 “을”의 가맹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이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b>20%</b>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b>40%</b>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b>&lt;분할지급 시 절차&gt;</b>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본사 제작 관련매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특혜자피자]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 준비중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특혜자피자]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개점 전 교육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집단강의 현장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협의 후 변경 가능)	필수교육
수시교육 (정기/부정기)	서비스 품질 강화 등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 서비스 품질 강화 기타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필요 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특혜자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개점 전 교육	일일 약 6시간 / 5일	3,3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필수교육인원 1인
수시교육	개별 산정	협의 후 결정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교육(개점 전 교육/수시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1. 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초도물품(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가맹본부 재무자료(2023~2024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인근가맹점현황문서

###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포예정지역		브랜드명		
구분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5. 판매상품 리스트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비고
	Regular	Large	
콤비네이션	18,500원	21,500원	-
포테이토 베이컨	18,500원	21,500원	-
하와이안	18,500원	21,500원	-
하와이 페파로니	18,500원	21,500원	-
하와이 베이컨	18,500원	21,500원	-
더블 고구마 하와이	20,300원	23,300원	-
고르곤졸라	18,500원	21,500원	-
달콤 고구마무스	18,500원	21,500원	-
페파로니	18,500원	21,500원	-
치즈 온더 체다	18,500원	21,500원	-
수제불고기 발	18,500원	21,500원	-
콘치즈 발	20,300원	23,300원	-
핫라피뇨	18,500원	21,500원	-
핫라피뇨 페파로니	18,500원	21,500원	-
핫라피뇨 쉬림프 치킨	23,300원	26,300원	-
핫라피뇨 불고기	22,300원	25,300원	-
핫 베이컨 트리플	23,300원	26,300원	-
베이컨 온더 체다	21,300원	24,300원	-
단짠 고구마 햄수수	21,300원	24,300원	-
감자튀김 피자	21,300원	24,300원	-
트리플 치즈	21,300원	24,300원	-
트리플 쉬림프	23,300원	26,300원	-
불고기 인 고구마	21,300원	24,300원	-
불고기 인 텐더	23,300원	26,300원	-
오꼬노미야끼 피자	21,300원	24,300원	-
쉬림프 포테이토 불고기	23,300원	26,300원	-
쉬림프 스테이크 풍뎉	23,300원	26,300원	-
고구마 스테이크 풍뎉	23,300원	26,300원	-
시카고 (크러스트 무료)	25,300원		-
시카고 페파로니 (크러스트 무료)	25,300원		-

▶ 상기 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 상기 품목의 가격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